

# KB스타플랫폼 가맹점 약관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가맹점"이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가맹점"에 제공하는 KB스타플랫폼 (이하"스타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한 "스타플랫폼" 가맹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스타플랫폼"이란 "제휴사"가 "제휴사 플랫폼"에서 "은행"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지원 플랫폼을 말합니다.
  - 2. "서비스"란 "가맹점"이 "제휴사 플랫폼"을 통해 "회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은행"이 거래승인, 대금입금, 정산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회원"이란 KB스타플랫폼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고 "은행"의 승낙을 통해 "은행"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4. "제휴사"란 "은행"과 별도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기업고객으로 "스타플랫폼"을 "이용"하는 "제휴사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5. "가맹점"이란 "제휴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회원"이 "스타플랫폼"을 통하여 결제가 가능한 업체를 말합니다.
  - 6. "스타플랫폼 관리센터"란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운영하는 "가맹점" 전용 채널을 의미합니다.
  - 7. "이용"이란 "제휴사"가 "제휴사 플랫폼" 회원 및 "가맹점"을 위해 "제휴사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상품 등"이란 "가맹점"이 판매하거나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을 말합니다.
  - 9. "제휴사 플랫폼"이라 함은 양사 협의를 통해 정한 "스타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휴사"의 웹사이트, 모바일앱, 프로그램 등의 대상을 말합니다.
  - 10. "결제기관 등"이란 "회원"의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승인을 하는 기관(은행, 신용카드사 등)을 말합니다.
  - 11. "결제수단"이란 금융회사의 계좌(이하 "결제 계좌"라 한다), 카드사 등이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포함한 카드(이하, "결제 카드"라 한다) 등 "회원"이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 등"을 구입 및 이용하기 위한 지불 수단을 말합니다.
- ② 본 약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은행"의 KB스타플랫폼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또는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바를 준용합니다.



## 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

- ① "가맹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에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며, "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② "은행"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을 신청한 자가 본 약관 제15조1항에 의하여 이전에 "가맹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예: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을 이용한 경우
  -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4. 가입을 신청한 자의 귀책사유(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연체정보 등으로 가맹점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등)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은행"이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거나 조건에 미달하여 신청하는 경우
  - 5. 가입을 신청한 자가 18세 미만의 국내 개인사업자인 경우
  - 6. 가입을 신청한 자가 적법한 인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7.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나 위반된 경우
- ④ "은행"은 제2항 및 제3항 따라 가입신청의 승인을 하지 않거나 유보한 경우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① "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스타플랫폼 관리센터" 및 "은행"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 ② "은행"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변경 1개월 전에 전자적 장치("스타플랫폼 관리센터" 및 "은행"의 홈페이지 등) 및 "은행"의 영업점에 게시하고 "가맹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가맹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이 전 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한 후 "가맹점"은 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은행"은 "가맹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은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5조 ("정산계좌"의 개설)



- ① "가맹점"은 "회원"이 구매한 "상품 등"의 거래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예금계좌(이하 "정산계좌"라 합니다.)를 개설하거나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등록한 "정산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스타플랫폼 관리센터"를 통해 "은행"에 "정산계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은행"의 책임과 의무)

- ① "은행"은 "가맹점"이 제공하는 "상품 등"을 "회원"이 구매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② "은행"은 "회원"이 지불한 거래대금을 원활히 "가맹점"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및 기타 "은행"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결제기관 등"에게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제휴사 플랫폼"에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시간동안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7조 ("가맹점"의 책임과 의무)

- ① "가맹점" 또는 "제휴사"는 "결제기관 등"에 표시되는 "스타플랫폼"을 통한 결제내역에 "은행"의 명의 및 "스타플랫폼"의 브랜드가 사용되는 경우일지라도 "상품 등"의 판매자는 "가맹점"이라는 점과 "상품 등" 제공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음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회원"이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등과 같이 관련법령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상품 등" 구매계약의 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은 "회원"과 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회원"에게 고지한 배송일 기준 3일 이상 배송지연 또는 "상품 등"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 및 "은행"에게 즉시 서면, 전자적 장치 또는 전화로 안내 및 고지를 해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은 "은행"에 신고한 가맹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은행"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스타플랫폼 관리센터"를 통해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점"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8조 ("서비스"의 중단)

- ① "가맹점"이 "제휴사 플랫폼"을 통해 "스타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는 "가맹점"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결제에 한하며,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은 "제휴사"가 "은행"에게 고지, 설명한 "상품 등"에 한합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행"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2.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2년 이상 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은행"이 "정산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 4.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5. "가맹점"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 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 6. "가맹점"이 직접 판매와는 무관하게 "스타플랫폼"을 통해 금전융통거래, 전표유통, 자가매출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 7. "가맹점"이 "회원"의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하거나 "가맹점"이 직접 "회원"의 "접근매체" 정보를 대행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8. "가맹점"이 "제휴사"를 통해 "은행"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품 등"의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 ③ "은행", "제휴사" 및 "결제기관 등"의 시스템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은행"은 "가맹점"에게 "제휴사 플랫폼" 내 "스타플랫폼" 화면 과 "스타플랫폼 관리센터"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휴사 플랫폼"내 "스타플랫폼" 화면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7일 전까지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9조 (거래의 취소)

- ① "가맹점"은 "회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거나 제공된 "상품 등"의 취소, 반품 등의 사유로 "스타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과 "제휴사"가 협의한 방식으로 "은행"에 거래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계좌"로 결제한 거래의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거래 를 "가맹점"의 차기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맹점"의 정산계좌에서 "회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출금하여 "회원"의 "결제 계좌"로 거래 대금을 입금합니다. 단,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가맹점"은 "은행"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③ "은행"은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카드"로 결제한 거래의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의 차기 정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④ "가맹점"은 "정산계좌"의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은행"을 통한 거래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가맹점"이 "회원"에게 대금을 반환합니다.
- ⑤ "가맹점"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의 취소, 반품, 환불을 진행한 경우, 기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공제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 제10조 ("서비스" 이용 수수료)

- ① "은행"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요율 등은 'KB스타플랫폼 가맹신청서' 또는 서면(또는 전자문서)을 통해 통지하고, "스타플랫폼 관리센터"에 게시합니다.
- ② "은행"은 수수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내용을 1개월 전에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합니다.

## 제11조 ("가맹점" 정산)

- ① "은행"은 "회원"이 "결제수단"을 통해 지불한 "상품 등"의 거래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정산대금"이라 합니다.)을 아래 각호의 정산주기에 따라 "가맹점"의 "정산계좌"로 입금합니다. 단,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과 "은행"이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약정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의 "정산계좌"로 "정산대금"을 입금합니다.
  - 1. "회원"이 "결제 계좌"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 "회원" 명의의 "결제 계좌"에서 출금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
  - 2. "회원"이 "결제 계좌"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을 "은행이 수령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
- ② "은행"의 책임으로 인해 약정된 "정산대금"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정산대금" 입금이 지연된 경우 "은행"은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 ③ "은행" 또는 "가맹점"은 "정산대금"과 관련하여 과오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산합니다.

#### 제12조 (거래정보의 보관 및 제공)

- ① "가맹점" 및 "은행"은 본 약관에 의한 거래 및 관련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 및 "은행"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회원"의 정보 또는 자료에 관

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이 있는 경우 "결제기관 등" 또는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13조 ("정산대금"의 지급 보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가맹점"에 그 사유와 보류 기간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가맹점"의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있습니다. "정산대금"의 지급보류를 통지받은 "가맹점"은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상품 등"의 배송지연 및 "가맹점"의 계약불이행 등의 이의를 "은행"에 제기한 경우
  - 2. "가맹점"이 물품배송 지연 사유 미공지에 따른 이의제기 및 "가맹점"이 거래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할 "정산대금"이 자금세탁, 불법 상행위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8조 1항을 위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
  - 5. 제8조 2항에 따라 "은행"이 "가맹점"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경우
  - 6. "가맹점"의 "정산계좌"가 해지되는 등 입금 불능 상태임에도 서면 또는 통신을 비롯한 "가맹점"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가맹점"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② "은행"은 "정산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때에는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각호에 따라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정산대금"이 이미 "가 맹점"에 지급된 경우, "은행"은 "가맹점"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만 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회원"의 이의제기)

"은행"은 거래처리 외에 "가맹점"과 "회원"간에 발생한 상거래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대상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 제15조 (계약의 해지)

- 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 그 사유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가맹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가맹점"과 "은행" 간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우 내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은 유효합니다.
  - 1. 제8조 2항에 따라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2. "가맹점"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 4.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 5.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6.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 등"을 이용하여 현금할인, 재판매,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한 경우
  - 7. "은행"과 "제휴사" 간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 8. "가맹점"과 "제휴사" 간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계약 해지를 통지받은 "가맹점"은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이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가맹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6조 (신의성실 및 기밀유지)

- ① "가맹점"과 "은행"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제휴사"와 "은행"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17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18조 (양도금지 등)

"가맹점"은 본 계약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가맹점"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전매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19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가맹점"과 "은행"은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상대방 또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20조 (효력의 발생 및 유효기한)

본 약관은 "가맹점"이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은행"이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21조 (신용정보 제공)

- ① "은행"은 본 약관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제 정보를 "가맹점" 승인 및 관리업무상 필요한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통해 "가맹점"의 동의를 받은 후 신용정보기관과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가맹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통해 "가맹점"의 동의를 받은 후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있습니다..
- ③ "스타플랫폼"을 통한 "가맹점"과 "회원"간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은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KB스타플랫폼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기타 "은행"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2020, 5, 6)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1. 7. 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3. 4. 17)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